

의안번호	2207291
의 퇴 인	장동혁의원
회 답 일	2025.1.21.
추 계 번호	25D0081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가중료, 치료 위탁, 가출소 결정 대상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억 9,700만원(연평균 2억 5,9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 (안 제23조)	249	254	259	265	270	1,297	259

주: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(가중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)	현행법은 특정 범죄자로서 집행 중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나,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가중료, 치료위탁, 가출소 대상자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2	안 부칙 제2조	전자장치 부착은 이 법 시행 당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3조(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)	○	-
2	안 부칙 제2조	×	이 법 시행 당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 해당되는 대상자 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⁾
-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전자장치 구입 비용을 추계함²⁾
 - 개정안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연평균 총 가종료·치료위탁·가출소 결정 건수에서 연평균 가종료·치료위탁·가출소 특정범죄자의 수를 뺀 값인 133명(190명[표2]-57명[표3])으로 하고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.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5	2.1	2.0	2.0	2.0	2.0	2.0

2) 법무부에 따르면 가종료·가출소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을 위해 집행한 예산을 별도로 산출하고 있지 않으나, 2025년 전자감독 사업비 예산은 336,847백만원으로, 전자감독·신상정보등록 전담인력 운영(공무직만 해당) 10,081백만원, 전자감독·신상정보 등록 운영 6,456백만원, 장치 및 시스템 관리 19,201백만원, 사업지원경비 1,109백만원이고, 추가 부착 대상자 수를 고려해 기존 인력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하여 인건비 등을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[표 2]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·치료위탁·가출소 결정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	평균
가종료	186	270	186	132	120	894	179
치료위탁	0	0	0	0	0	0	0
가출소	15	15	11	8	4	53	11
합 계	201	285	197	140	124	947	190

자료: 법무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3] 가종료·치료위탁·가출소 결정 대상자 중 특정범죄자 수: 2020~2024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	평균
가종료	66	72	68	31	29	266	53
치료위탁	0	0	0	0	0	0	0
가출소	8	3	2	4	3	20	4
합 계	74	75	70	35	32	286	57

자료: 법무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전자장치 부착 단가는 법무부 ‘전자감독’ 세부사업을 참고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
 - － 현재 법무부 ‘전자감독’ 사업의 자산취득비로 전자감독장비를 구입하고 있으며, 2024년 기준 전자장치 개당 가격은 180만원임

[표 4] 전자장치 단가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전자장치 부착 단가	187	191	195	199	20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개정안에 따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가중료, 치료위탁, 가출소 결정 대상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억 9,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5]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전자장치 부착 대상자(a, 건)	133	133	133	133	133	-
전자장치 단가(b, 만원)	187	191	195	199	203	-
전자장치 부착 비용(a×b, 백만원)	249	254	259	265	270	1,29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